

# 김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7. 12. 5일 김제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'97. 12. 16

다. 상 정 일 자 : 제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('97. 12. 22 )  
총무위원회에 상정

## 2. 제안설명요지( 제안설명 : 세정과장 나세훈 )

가. 제 안 이 유

-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가 '97. 12. 31일로 적용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'98. 1. 1일부터 적용 시행할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임

나. 주 요 골 자

- 국가 유공자에 대한 재산세, 종토세, 도시계획세 면제( 안제2조 제1항 )
- 장애인( 1 ~ 3급 )소유 승용자동차( 2000cc이하 )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( 안 제4조 제1항 )
- 사회교육시설에 대하여 재산세, 종토세, 도시계획세 면제( 안 제8조 )
-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 5년간 면제(안제12조)

-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, 종토세 50%감면  
( 안 제13조 )
- 주민 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지세, 자동차세 면제  
( 안 제14조 )
-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50%감면( 안 제18조 )

### 3. 전문위원 검토 보고

- 지방세법 제 3조 ~ 제4조 및 제9조등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을 보고

### 4. 질의 및 답변

- 질의( 의원 임철환 )  
참고자료를 보면 2000년까지 연장한다고 했는데 50%감면도 2000년까지 연장되는가?
- 답변( 세정과장 나세훈 )  
예. 그렇습니다.

- 질의(의원 정영환)  
감면 조례를 악용,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닉재산  
색출에 노력요망
- 답변(세정과장 나세훈)  
장애인 자동차등 악용사례가 있는걸로 심증은 가나 아직 발굴하지는 못했음  
노력하겠음

## 5. 심 사 결 과

- 총 11명위원중 8명위원이 참석, 표결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